

유고결석처리에 관한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시행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유고결석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고결석의 사유 및 허용기간) 유고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유고결석의 허용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고결석의 신고·인정) ① 유고결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유고결석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별지서식 제1호)에 증빙서류(별표 1 참조)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고결석의 인정은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29.)

제4조(유고결석의 출석처리) 교무처장이 유고결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05.29.)

제5조(유고결석자의 추가시험신청) 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칙시행규정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유고결석자의 성적) ① 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또는 기말 시험 중 어느 하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행정실에 성적인정원(별지서식 제2호)을 제출하고 응시한 시험만으로써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모두 응하지 못하거나 당해 학기에 1회만을 실시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 응한 때에만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3-3~2 제3편 행 정

(별표 1)

유고결석사유, 결석허용기간 및 증빙서류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기간	증 빙 서 류
1. 직계존비속의 사망 * 인정되는 관계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처, 자, 형, 동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2.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
3. 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 (타군출신자)	소요시간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4.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5. 본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① 개교기념 체육대회 ② 총학생회 주최행사 ③ 총학생회 회의(간부·임원에 한함) ④ 연극발표회 ⑤ 방송실녹음업무 ⑥ 학보기사의 작성·편집 ⑦ 졸업준비(졸업준비위원회에 한함) 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소요일	필요한 증빙서류(확인서 등)

